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380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2023. 7. 1.부터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종료하고 안전보험 보장대상을 아동에서 전 구민으로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27. ~ 2023. 8. 16.) 결과: 별도 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도첨부
- 4)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조연우
연 락 처	2627 - 2848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2019.05.09. 조례 제10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생활안전보험”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중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구와 아동 생활안전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아동”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5. “구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구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 중 만 18세 이하의 아동 또는 만 18세를 초과한 구민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납입) 구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보험금의 산정) 보험금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1021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3. 8. 17.]